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사업 실행신고 첨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2건의 농림축산식품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2. 1. ~ 2023.3. 13.) 예정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
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안

제1조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 산림
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72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)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2조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72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 실행신고 첨부서류의 범위: 2017년 1월 1일	<삭제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삭제	
5.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범위: 2017년 1월 1일	<삭제>
6. ~ 8. (생략)	6. ~ 8. (현행과 같음)

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제18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수목원의 개원일수 및 개방시간: <u>2014년 1월 1일</u>	<u><삭제></u>